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95호 2021. 5. 4(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6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신설]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6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수 량 : 15점(지적도근점 신설)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 의 : 032-560-4825

연번	기준점		세계측지계(중부원점)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	지적도 근점	10073	37°34'45 .6558"	126°39'3 3.6664"	553365. 43	169909. 89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12-89)	2021. 2. 3.	철재	신설
2	지적도 근점	10074	37°34'58 .3001"	126°39'2 9.4642"	553755. 63	169808. 20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6)	2021. 2. 3.	철재	신설
3	지적도 근점	10075	37°34'57 .2041"	126°39'2 5.2187"	553722. 22	169703. 91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4	지적도 근점	10076	37°34'56 .6291"	126°39'2 1.2447"	553704. 85	169606. 34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5	지적도 근점	10077			553674. 87	169501. 69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6	지적도 근점	10078			553544. 78	169503. 77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7	지적도 근점	10079			553517. 42	169513. 69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8	지적도 근점	10080			553517. 29	169586. 65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9	지적도 근점	10081			553524. 50	169720. 88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5)	2021. 2. 3.	철재	신설

연번	기준점		세계측지계(중부원점)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0	지적도 근점	10082			553517. 68	169805. 75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11	지적도 근점	10083			553648. 76	169806. 97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12	지적도 근점	10084			553645. 02	169849. 25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13	지적도 근점	10085			553570. 50	169996. 20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14	지적도 근점	10086			553517. 92	169961. 49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15	지적도 근점	10087			553517. 85	169905. 76		폐기물처리사업 (백석동 257)	2021. 2. 3.	철재	신설

* 지적기준점은 토지경계 분쟁 방지와 그 해결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각종시설 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재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5)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배달음식 증가 등의 사유로 1회용품 사용의 급증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 및 다회용품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경제적 유인 제공·지원 추가(안 제3조)
- 교육과 홍보조항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3층
- 전 화 : ☎ (032)560-4695,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 1부.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개정.폐지)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회용품 사용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1회용품 사용 절감 ○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지원 사업 추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 사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가(안 제3조) ○ 1회용품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10조)
제정(개정.폐지)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 계 법 령 발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관 련 사 업 계 획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선정에 따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
예 산 수 반 사 항	총 사업비 1,219백만원(국비 60%, 구비40%) 자체구비(운영비) 별도
기 타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코로나 19, 배달음식 증가 등의 사유로 1회용품 사용의 급증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자 함.
- 1회용품 사용업소에 다회용품 무상 지원 사업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경제적 유인 제공·지원 추가(안 제3조)
- 나. 교육과 홍보조항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 완 료
- 다. 합 의 : 3개 부서 합의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홍보함”을 “교육·홍보·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본청 및 직속기관,”을 “본청, 직속기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불가피하다고”를 “피할 수 없다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지”를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육과 홍보)”를 “(교육, 홍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장 정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u>교육·홍보함</u>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교육·홍보·지원함</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u>본청 및 직속기관</u>, 하부행정기관</p> <p>나. ~ 마.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p> <p>가. ----- ----- ----- <u>본청, 직속기관 및</u> -----</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u>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 ----- ----- ----- ----- <u>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u> -----</p>

② (생략)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생략)

② ~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현행과 같음)

② -----
---- 피할 수 없다고 -----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

-----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련
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공직선거법」 제12조

제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시설함으로써 현금보상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초기단계부터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함으로써 쓰레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항)
 -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3층
- 전 화 : ☎ (032)560-4637, FAX (032)560-276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 1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현금보상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초기단계부터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함으로써 쓰레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순환자원 회수센터(AI무인수거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항)
-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지 참조”

나. 예산조치: 제2회 추경예산 신청

다. 합 의: 3개 부서 합의

라. 기 타: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4조의2(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 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u> <u>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u> <u>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업무</u>

관계법령 발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